



제305회 정례회
2011. 12. 20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선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1년 12월 7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열린감사 실현과 도와 시·군정의 감사기능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능력 제고를 위해 제정된 조례를 공정성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민감사관 구성 및 자격 등(안 제3조)
 - 도민감사관의 시장·군수 추천내용 삭제
 - 도민감사관 자격에 해당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
-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관련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척 및 회피(안 제5조의2)
-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범위 확대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시·군 감사시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도민감사관 위촉시 시장·군수의 의무적인 추천 조항을 삭제하여 시·군 감사에 대한 도민감사관의 실질적인 역할을 도모하였고,
- 자격기준을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 중인 자까지 확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,
- 제척 및 기피조항을 신설하여 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